

**동두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3.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 3. 11

다. 상정일자 :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근거법인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면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현행조례 제3조의 규정을 사기, 부실공사,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조례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